

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

공주시 제 2026-2711호

반출금지 구역		면적 (ha)	피해상황			행위제한 사항	위반 시 벌칙
			발생위치	면적 (ha)	감염목 수 (본)		
계		52,651		539.78	85		
이인면	북룡리	334				1.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목등인 원목의 이동 2.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3.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4. 굴취(掘取)된 소나무류의 이동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	운암리	796					
	이곡리	238					
	달산리	424					
	이인리	257					
	산의리	288					
	반송리	305					
	신영리	395					
탄천면	덕지리	454	산52-1외 2	6.0	6		
	삼각리	620	산5-1	6.2	1		
	광명리	463	산47-1	2.6	1		
	안영리	421	산66-7	0.5	3		
	남산리	805					
	장선리	296					
	화정리	184					
	대학리	587	555	0.1	1		
	견동리	309					
	운곡리	252					
	국동리	240					
	송학리	231					
	성리	174					
	정치리	298					
	가척리	599					
반포면	상신리	771					
	하신리	389	산4,137-1	5.6	12		
	공암리	290					
	봉곡리	639	산20-1	1.3	1		
	학봉리	1,486	산30-1	246	2		
	온천리	936	420-3	0.1	1		
	마암리	969					
사곡면	송곡리	523					
	회학리	425					
	대중리	431	산10	80	8		
	계실리	646	625, 산14	122	2		
	고당리	319					
	호계리	434					
	화월리	816					
	가교리	591					
	신영리	928					
	해월리	436					
	운암리	1,015					
정안면	월加里	826					
	평정리	800					
	화봉리	375					
	상룡리	275					
	인풍리	484					

	태성리	306			
동	월미동	215			
	송선동	401	320-8 외 6	6.0	14
	동현동	473			
	금흥동	293			
	쌍신동	293			
	봉정동	572			
	웅진동	465	산8	0.6	1
	교동	38			
	반죽동	36			
	금성동	129			
	산성동	29			
	중동	29			
	중학동	42			
	옥룡동	232			
	신관동	402			
	봉황동	39			
의당면	울정리	229			
	청룡리	576	65-4	0.08	1
	유계리	554			
유구읍	탐곡리	633	산41	6.5	1
	덕곡리	469			
	문금리	1,124	산188-1	5.1	2
	백교리	474			
	석남리	228			
	유구리	557			
	만천리	417	산14 외 4	2.8	10
	녹천리	1,016			
	신영리	656			
	추계리	663			
	세동리	254			
	연종리	396			
	동해리	717			
	산성리	580			
신평면	산정리	529			
	화흥리	593			
	쌍대리	936	산130 산132-3 산117	14.1	7
	청흥리	481			
	백룡리	515	산73-1, 산70	3.3	2
	영정리	462			
	입동리	425	산59-1, 산17	8.9	1
	동원리	519			
	평소리	359			
	선학리	438			
	봉갑리	820			
	대룡리	430			
	용수리	424			
	조평리	1,107	99-5	0.6	1
우성면	한천리	715	산53	2.7	1
	반촌리	217			
	내산리	514	산24-1	1.0	1

	방문리	576			
	상서리	395			
	봉현리	544	산72	2.1	2
	보흥리	948	산43-11	9.4	1
	방흥리	339			
	오동리	241			
	용봉리	407	산11-1	1.7	1
	안양리	536			
	동대리	269	산42	4.5	1
	대성리	271			
	단지리	120			
	목천리	458			
	귀산리	109			
	동곡리	146			
	도천리	174			
	신웅리	207			
	평목리	116			

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공 주 시 장



소나무류 취급(이동)시 유의사항

구 분	반출금지구역	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
대상수종	소나무, 해송(곰솔), 잣나무, 섬잣나무	소나무, 해송(곰솔), 잣나무, 섬잣나무
소나무류 이동가능 여부	○ 소나무류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금지 단, 조경수·분재, 훈증처리목을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「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」을 발급 후 이동 ○ 산지전용허가지(각종공사장)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함(이동금지)	○ 소나무류 이동가능 조경수·분재·굴취목·원목을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주시 산림자원과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후 「소나무류 생산확인증」을 발급 후 이동
방 제 계획서	○ 공사 착수시 「재선충병방제계획서」(소각·파쇄 등) 공주시 산림자원과로 제출 ⇒ 처리완료 후 방제완료서 제출	○ 방제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.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「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」 제출 ⇒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가능

※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(840-787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구역도





